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2005년 3월 1일 제정
2011년 3월 1일 1차 개정
2013년 3월 1일 2차 개정
2015년 3월 1일 3차 개정
2021년 3월 1일 4차 개정
2023년 12월 22일 5차 개정(전부 개정)
2024년 4월 16일 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유치원은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이하 "본원"이라 함)

제3조 (위치) 본 원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번지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원의 수업연한은 1~ 3년으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장이 정한 날(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 다음일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로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다.

제6조 (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하계 휴가
5. 동계 휴가
6. 학년말 휴가
7.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임시 휴업할 수 있다.
8. 기타 휴일 (본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시로 휴업할 수 있다)
9. 학교장(원장) 재량휴업일
10. 토요일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 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급당 원아수용지표에 따라 반 편성하며 1학급 3~5세 혼합연령반으로 한다.

제8조 (유아 정원) 본 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 수용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①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유치원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적용한다.
- ② 방과후과정반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유아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제10조 (수업일수 등)

-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 (수업시간) 본 원의 1일 교육시간은 오전 교육과정 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이며 방과후과정으로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단 유아의 발달수준, 계절, 학부모 요구, 및 유치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 운영 방법)

- ① 수업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
- ②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13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13조 제1항 10호 그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

요건		지도 방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예)반복적 지각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예)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보호자의 방문증 패용 등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
3	시설 이용 (예)타 학교급 시설 이용시 안전 문제 등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경우 주의
4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예>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교구 또는시설 파손	·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 유아와 보호자 상담 ·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예>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

② 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제2장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③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13조 제3항 3호에 분리보관 가능 물품】

요건	보관기간	분리장소	처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 총, 공기,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30일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물품분리보관 일지 등 활용 가능)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술, 담배 등			
3 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고가의 물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등의 소지와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 유치원에서 결정	활동시간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소지와 사용범위 작성 - 등원하면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어보관 - 사용해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장 학적사항

제17조(입학)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② 신입 유아 선발은 당해 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8조(재입학/편입학/전입학) 본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19조(휴학)

- ①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자퇴/퇴학)

- ① 개인 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 ②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 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 ④ 2학기 시작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결과서

결 재	담당
	전결

반 명		유아명	
기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체험 학습형태	가족여행(), 행사체험(), 기타()		
체험장소			
함께 체험 하는 가족			
활동 내용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보호자 (인)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18조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원 결정
 ※ 유아학비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와 별개 사안임
2. 보호자는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신청서 및 보고서는 [유아나이스-교무업무 또는 유치원 학부모서비스] 참고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유아 건강 및 안전 확인한다.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유아에게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유아의 안전 확인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주 1회 이상 수시로 유아의 안전 상태 확인(교외체험학습 허가 시 학부모와 유아에게 사전 안내)